

산학협력단 사무분장 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및 관련규정에 의거 설치된 각 부서의 소관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처리) 동일한 사무가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직제상 상급 부서장의 결정에 따라 그 소관을 정한다.(개정 2016. 9. 5.)

제2장 산학협력단

제3조(산학협력총괄실) 산학협력총괄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(개정 2012. 2. 1., 2020. 12. 21., 2022. 3. 1.)

1. 산학협력업무 총괄, 기획 및 조정
2. 산학협력 계약체결 및 이행
3. 산학협력사업 홍보 및 유치 업무
4. 산학협력관련 부속기관의 지원 및 관리
5. 위원회 관련업무
6. 자금 지불 및 결산 업무
7. 세무 및 재무 업무
8. 산학협력단 전산개발 및 운영
9.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관리
10. 산학협력단 교직원 인사 및 급여관리
11. 단장 직인관수
12. BK(두뇌한국)21 사업 지원 업무
13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14. 그 밖에 타 실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
제4조(연구지원실) 연구지원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(개정 2007. 8. 1., 개정 2010. 6. 24., 2010. 12. 6., 2012. 2. 1., 2015. 2. 6., 2020. 12. 21.)

1. 연구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진흥사업 지원
2.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과제 관리
3. 정부 및 정부출연기관 연구과제 관리
4.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력양성사업 과제 관리
5. 일반기업체 연구과제 관리
6. 간접비 관리
7. 연구비 원가계산 업무
8. 연구비 중앙관리(인증제 포함) 업무
9. 각 사업단 연구관련 지원 업무
10. 연구지원시스템 관리
11. 연구계약용 직인 관수

6-0-3-2 산학협력단

12. 연구과제 통계 및 자료관리
13. 연구소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
14. 타 대학 의뢰 실적물 심사
15. 연구진홍위원회,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업무
16. 행정연구지원
17. 그 밖에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4조의2(산학예산팀) 산학예산팀은 산학협력단 회계를 사용하는 부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(신설 2022. 3. 1.)

1. 산학협력단 예산편성 및 통제
2. 산학협력단 예산분석 및 평가
3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4조의3(산학구매팀) 산학구매팀은 산학협력단 회계를 사용하는 부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(신설 2020. 7. 1., 개정 2022. 3. 1.)

1. 각종 물품 구입 업무
2. 시설공사 입찰 및 계약체결 업무
3. 각종 용역 및 시설물 임대 계약 업무
4. 외자 기자재 통관 업무
5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4조의4(산학검수팀) 산학검수팀은 산학협력단 회계를 사용하는 부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(신설 2020. 7. 1., 개정 2022. 3. 1.)

1. 검사 및 검수 업무
2. 검수조서 및 대장의 관리
3. 검수실적 통계
4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5조(기업지원실) 기업지원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(신설 2012. 2. 1., 개정 2015. 8. 10., 2020 7. 1.)

1. 기업지원
 - 가. 기업교육 관련 업무
 - 나. 가족회사제 관련 업무
 - 다. 비즈니스 인맥 네트워크 관리
 - 라. 산학협정 관리
 - 마. 산업체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비의 관리 및 운영
 - 바. 연구시설·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
 - 사. 그 밖에 기업지원과 공용장비에 관련한 모든 업무
2. 기술사업화지원
 - 가. 직무발명 관련 업무
 - 나. 지식재산권 출원과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
 - 다.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관련 업무
 - 라.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리
 - 마.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지원과 관리
 - 바. 학교기업 설치 및 지원

사. 기술창업 지원

아. 학생, 교원 및 직원 창업 지원 업무

자. 연구소 기업 창업 지원 업무

차. 벤처 연계형 창업 및 창업보육 사업과 연계한 지원 업무

카. 글로벌 창업 지원 업무

타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5조의2(기술사업화실) (삭제 2020. 7. 1.)

제6조(공용장비지원실) (삭제 2015. 8. 10.)

제7조(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) (삭제 2020. 12. 21.)

제7조의2(산학연구소) 산학연구소는 국가지방단체와 공공단체 및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(신설 2015. 8. 10.)

1. 연구조사

2. 경영컨설팅

3.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

4. 계약금액 조정

5. 개발비용 산정 및 확인

6. 학술용역

7. 사업타당성 검토 및 조사

8. 중소기업 경영진단과 지도상담

9. 연구발표회와 연수회 및 초청강연회개최

10. 그 밖에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제7조의3(미래산업전략연구센터) (삭제 2019. 2. 1.)

제8조(기타) 이 규정에 사무분장 사항이 규정되지 아니한 사무분장은 당해 부서 및 센터 (기관)의 규정에 의한다.

부 록

1. 이 규정은 2007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개정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이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4.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5. 이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6. 이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7. 이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8. 이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9. 이 개정규정은 2016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.
10. 이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.
11. 이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2. 이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3. 이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6-0-3-4 산학협력단

14. 이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